‘13년 MSDS 감독 결과 및 정책방향

고용노동부

'13년 MSDS 감독결과 및 정책방향

발표순서

I 감독개요

II 감독결과 및 분석

III 시사점

IV 정책방향

고용노동부

Ⅰ. 감독개요

추진배경

- MSDS 및 경고표시 제도개선 이후 이행실태를 감독('12년~)한 결과 위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동 제도의 현장 작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 관리

  * ① MSDS 및 경고표시 관련 의무주체를 화학물질 양도 · 제공자와 사용 사업주로 구분하여 합리화, ② MSDS 부실 · 허위 작성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, ③ 변경된 MSDS 제공 의무 신설 등('12.1.26 시행)

감독대상 및 내용

〈제조 · 수입 · 유통 · 취급사업장〉

- MSDS 작성 및 제공 여부, 용기 · 포장에 경고표시 여부
- MSDS 게시 · 비치 및 교육 실시 여부, 소분[小分]용기에 경고표시 여부
- 누락 · 거짓 작성 등 부실작성 여부
- 영업비밀 남용 여부 등

고용노동부

Ⅱ. 감독결과

사업장별 감독결과

- 감독 실시 사업장 660개소 중 위반사업장은 416개소로 전체 위반율은 63.0%

  ※ '12년의 경우 684개소 중 위반사업장은 509개소로 전체 위반율은 74.4%

  – 위반사업장 416개소 중 취급사업장이 335개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, 건설현장이 56개소로 그 다음 순임

〈사업장별 위반 현황〉

[단위: 개소, %]

구분	전체	제조업체	수입업체	유통업체	취급사업장	건설현장
실시	660	26	6	6	535	87
위반	416	17	3	5	335	56
위반율	63.0	65.4	50.0	83.3	62.6	64.4

고용노동부

Ⅱ. 감독결과

위반내용

- 근로자에게 MSDS를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(35.1%)
- MSDS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(34.1%)
-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(28.2%) 등의 순임

〈위반건수 현황〉

(단위: 건, %)

구분	전체	두	루	무	부	수
실시	784	19	275	221	2	267
위반	100.0	2.4	35.1	28.2	0.3	34.1

* 두: MSDS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
* 루: MSDS를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
* 무: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
* 부: 기재내용 변경 필요시 이를 반영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
* 수: MSDS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

고용노동부

Ⅱ. 감독결과

세부 위반내용

- MSDS를 제공받고도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(78.9%), 양도·제공하는 자로부터 MSDS를 제공받지 못하여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(20.7%) 등
- 사용사업주가 용기(소분용기)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(90.5%) 등

위반 항목	위반사항	
루	MSDS를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(35.1%)	MSDS를 제공받고도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(78.9%)
		MSDS를 제공받지 못하여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(20.7%)
		직접 제조한 경우로 MSDS를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(0.4%)
수	근로자에게 MSDS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(34.1%)	
무	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(28.2%)	사용사업주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(90.5%)
		양도·제공하는 자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(5.9%)
		용기 및 포장의 경고표시가 제거되거나 경고표시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 (3.2%)

고용노동부

사업장별 위반내용

- (취급사업장) MSDS를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(35.0%) 등
- (제조업체)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(36.0%) 등
- (수입업체 및 건설현장) MSDS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(각 50.0%, 44.3%) 등
- (유통업체) MSDS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(60.0%) 등

〈사업장별 위반건수 비교〉

(단위: 건, %)

위반내용	두	루	무	부	수	전체
제조업체	8 (32.0)	2 (8.0)	9 (36.0)	1 (4.0)	5 (20.0)	25 (100.0)
수입업체	0 (0.0)	2 (33.3)	1 (16.7)	0 (0.0)	3 (50.0)	6 (100.0)
유통업체	3 (60.0)	1 (20.0)	0 (0.0)	1 (20.0)	0 (0.0)	5 (100.0)
취급사업장	5 (0.8)	228 (35.0)	202 (31.0)	0 (0.0)	216 (33.2)	651 (100.0)
건설현장	3 (3.1)	42 (43.3)	9 (9.3)	0 (0.0)	43 (44.3)	97 (100.0)

고용노동부

Ⅲ. 시사점

- 전체 위반율은 63.0%로 '12년(74.4%)에 비해 10% 가량 감소하였으나, 각 의무주체의 MSDS · 경고표시 준수도는 여전히 낮음
- MSDS를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, MSDS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및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위반 건수의 97.4%
  - MSDS · 경고표시가 화학물질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

MSDS 및 경고표시는 양도 · 제공의 대상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화학물질의 유해성 · 위험성을 인지하고 **스스로 화학물질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**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함

고용노동부

Ⅳ. 정책방향

MSDS · 경고표시 이행실태 감독

- (대상) 다량의 화학물질 또는 유해성·위험성이 큰 화학물질 제조 · 수입 · 유통 · 취급사업장
  - (제조 · 수입 · 유통사업장) 화학물질 양도 · 제공시 MSDS 작성 · 제공 및 경고표시 여부, MSDS · 경고표지 부실 · 허위 작성 여부 감독
  - (취급사업장) MSDS 게시 · 비치, 경고표지 부착 및 근로자 교육 여부 감독

(일정) '14년 6월~8월

특별관리물질 확대

- 특별관리물질을 국제수준으로 확대
  - 발암성, 생식독성, 생식세포 변이원성 등 고위험물질을 유해성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특별관리물질로 추가 지정(현재 16종 지정)

고용노동부

Ⅳ. 정책방향

제5차 작업환경실태조사

- (대상) 제조업 5인 이상 및 일부 고위험업종 전수, 제조업 5인 미만 및 비제조업 표적업종 표본 조사하여 총 15만개소
- (조사항목) '09년 조사항목에 방사선·밀폐공간 작업 보유, 절곡기 등 위험기계·기구 보유, PSM 대상물질 취급 등을 추가

조 사 항 목

- 사업장 일반현황
- 작업환경현황(작업 보유 여부 및 해당 작업 종사 근로자수 등)
  - 소음·진동 발생 작업, 분진·흄 발생 작업, 도급 대상 작업, 고열·한랭·다습작업, 방사선 취급작업, 밀폐공간 작업
- 사용 기계·기구 및 설비현황
  - 법정 안전검사 및 안전인증 대상 기계·기구 및 설비 등
- 화학물질 취급 작업
  - 취급 공정, 용도, 제조·사용량, 취급 근로자수, 취급 시간 등

고용노동부